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832

발의연월일: 2024. 8. 14.

발 의 자:서삼석・임호선・이기헌

염태영 • 이용선 • 박수현

윤준병 • 신정훈 • 이개호

문금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은 수원함양, 재해예방, 경관 제공, 생활환경개선, 유전자원보호 등 우리 삶의 환경을 개선하고 산림생물다양성 확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산림의 공익기능 가치는 2020년 기준 259조원으로, 산림으로부터 국민 1인당 연간 499만원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어, 이러한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보존·관리하기 위해서는 산림보호를 중장기적 국가목표로 삼아 확대·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선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등 저탄소사회로 가기 위하여 대내외적으로 국가의 노력을 요구받고 있 는 가운데, 탄소중립 실현의 주요수단으로 산림이 주목받고 있음.

그러나 산림의 공익기능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유림 행위 제한에

대해 산주들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고, 2022년 10월부터 시행된 임업직불제는 사유림 중 경영림만을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보전림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 지원제도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산림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한 산주에 대한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보상제도인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산림보전에 대한 국민과 산주의 공감 확대와 함께 산림보호 사업을 적기에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5부터 제10조의9까지 신설).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5부터 제10조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0조의5(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도의 시행) 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산림의 공익가치 유지·증진 및 산림보호 활동에 기여한 산림소유자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도(이하 "산림공익보전지불제"라 한다)를 시행할 수 있다.
 - ②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산림공익보전지불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공익보전지불제 신청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1. 산림보호구역 내 산림 소유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대상 으로 하는 산림공익가치 유지·증진에 대한 지불금 지원 신청
 - 2. 산림보호구역 내 산림 소유자 또는 관리인을 대상으로 하는 산불예방 및 산림훼손 감시 등 산림보호 활동에 대한 지원 계약
- 제10조의6(등록신청 및 공고) ①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산림공익보전지불제에 따른 지불금(이하 "산림공익보전지불금"이라 한다)의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 1. 제10조의7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자
- 2. 등록신청의 기간 및 방법
- 3. 그 밖에 산림공익보전지불금의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
- ② 산림공익보전지불금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산림청장이 정하는 날까지 산지 소재지 관할 읍장·면장 또는 동장에게 등록을 신청하 여야 한다.
- ③ 산림공익보전지불금의 등록 및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의7(산림공익보전지불금의 지급) ① 산림공익보전지불금의 지급 대상은 산림보호구역의 사유림 소유자 등으로 하며 지급대상에 대 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산림공익보전지불금을 지급 받으려는 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준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산림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산림공 익보전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산림공익보전지불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 지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의8(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① 산림청장은 산림공익보전지 불제를 시행하기 위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화 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산림공익보전지불제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이용·처리·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의9(산림공익보전지불제 명예감시원)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 치단체의 장은 산림관련 단체의 회원·직원 등을 산림공익보전지불 제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감시·지도·홍보 및 위반사항의 신고 를 하게 할 수 있다.
 -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공익보전지불제 명예감 시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 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현 행 <신 설>	제10조의5(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도의 시행) 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산림의 공 익가치 유지·증진 및 산림보호 활동에 기여한 산림소유자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산림 공 익가치 보전 지불제도(이하 "산림공익보전지불제"라 한다)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산림공익보전 지불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공익보전지불제 신청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야한다.
	하는 산림공익보전지불제 신청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야한다. 1. 산림보호구역 내 산림 소유

<신 설>

하는 산불예방 및 산림훼손감시 등 산림보호 활동에 대한 지원 계약

제10조의6(등록신청 및 공고) ①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
함하여 산림공익보전지불제에
따른 지불금(이하 "산림공익보
전지불금"이라 한다)의 등록신
청에 필요한 사항을 농림축산
식품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 1. 제10조의7제1항에 따른 지급 대상자
- 2. 등록신청의 기간 및 방법
- 3. 그 밖에 산림공익보전지불금 의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
- ② 산림공익보전지불금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산림청장이 정하는 날까지 산지 소재지 관할을 장 · 면장 또는 동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산림공익보전지불금의 등록 및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 제10조의7(산림공익보전지불금의 지급) ① 산림공익보전지불금 의 지급대상은 산림보호구역의 사유림 소유자 등으로 하며 지 급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산림공익보전지불금을 지급 받으려는 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을 준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산림공익보전지불금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산림공익보전지불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10조의8(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① 산림청장은 산림공익 보전지불제를 시행하기 위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화에 필요한 시책 <신 설>

- 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산림공익보전지불제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이 용·처리·제공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의9(산림공익보전지불제 명예감시원)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관련 단체의 회원·직원 등을 산림 공익보전지불제 명예감시원으 로 위촉하여 감시·지도·홍보 및 위반사항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 체의 장은 산림공익보전지불제 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에 서 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